

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[별지 제32호서식] <개정 2017. 9. 22.>

국민연금 []장애발생 []사망 경위 신고서

※ 뒤 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				(앞 쪽)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	
가입자 또는 수급권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	
	전화번호(자택)	휴대전화번호		
	주소			
진료기관 및 진료기간	진료기관 명칭	소재지	기간	진단명
	초진:			
	최종:			
장애 발생 또는 사망 경위	질병, 부상의 경우	발생일	발생장소	
	사망의 경우	사망일시	사망장소	
		사망의 원인인 질병, 부상	초진일	
	경위:			
제3자 가해	가해자 (대표)	성명	주민등록번호	
		전화번호(자택)	휴대전화번호	
		주소		
	합의사항			
신고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	
	전화번호(자택)	휴대전화번호	가입자(수급권자)와의 관계	
	주소			

「국민연금법 시행규칙」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1.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기본사항은 모두 적으십시오.
2. "진료기관 및 진료기간"은 사실에 근거하여 순서대로 빠짐없이 적으시고,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용지를 사용하여 적으십시오.
3. "장애발생 또는 사망경위"란 : 기재란 부족 시 다른 용지 사용 가능
 - 장애발생(또는 사망) 경위는 육하원칙에 의해 빠짐없이 적으시고, "초진일"은 장애(또는 사망)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적으십시오(다만, 장애인이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인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).
4. "제3자 가해"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으십시오.
 -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"가해자"란은 그 대표를 기재하되,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등재된 명부를 첨부하십시오.
 - 가해자가 불명인 경우는 "가해자"란을 비워두되, "장애발생 또는 사망 경위"란에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으십시오.
 - "합의사항"란은 민·형사상 합의유무, 합의금액 및 수령여부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적되,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적으십시오.

처 리 절 차

